#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94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강선우·서미화·김 윤

김윤덕 • 소병훈 • 홍기원

이재관 · 김교흥 · 박해철

조승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 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 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350"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 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2. 2027년은 1만분의 500

- 3. 2028년은 1만분의 525
- 4. 2029년은 1만분의 550
- 5. 2030년은 1만분의 575
- 6. 2031년은 1만분의 600
- 7. 2032년은 1만분의 625
- ②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2026년은 1천분의 95
- 2. 2027년은 1천분의 100
- 3. 2028년은 1천분의 105
- 4. 2029년은 1천분의 110
- 5. 2030년은 1천분의 115
- 6. 2031년은 1천분의 120
- 7. 2032년은 1천분의 12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법에 따른 <u>연금급여가 안정적</u>	<u>연</u> 금급여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	•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이에
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u>1천분의 1</u>	<u>1</u> 천분의 <u>1</u>
<u>천200</u>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천350</u>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③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	
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u>1천분의</u>	<u>45</u> 에	해당
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생 략)

<u>1천분의 65</u>
4
<u>1천분의 130</u>
⑤ (현행과 같음)